

이사회운영규정

制定 2019.11.01.
改定,新設 2020.05.13.
改定,新設 2021.05.11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【 목 적 】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팜스코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【 적용범위 】

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조【 권한 】 (新設 2020.05.13.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【 구성 】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【 의장 】

- ① 의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 (改定 2020.05.13)
-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정한다. (改定 2020.05.13)
-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써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의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. (改定 2020.05.13)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【 성립 】

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.

제 7 조【 회의 장소 등 】

이사회는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한다.

단,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제 8 조【 구분 및 소집 】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되, 의장이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. (改定 2020.05.13.)

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.

(改定 2020.05.13)

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.

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9 조【 이사 아닌 자의 출석 】

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, 상담역 또는 고문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【 결의방법 】

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결의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 4 장 의 결 사 항

제 11 조【 결의사항 】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결의한다.

① 주주총회 및 기타 지배구조 (改定 2020.05.13)

1.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
2. 대표이사,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의 변경
4.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,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 제외) 위원의 선임 및 해임
6.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(이사회 재결의 필요사항 제외)
7. 기타 등기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
8. 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사항
9.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
② 투자 및 기획관리 (改定 2020.05.13)

1. 자산의 2%이상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
2. 자산의 2%이상의 비유동자산 취득

3. 자산의 2%이상의 신설 투자, 증설
 4.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이전 또는 폐지
 5. 회사 합병, 분할 등에 관한 사항
 6.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
 7.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
- ③ 회계 및 재무관리 (改定 2020.05.13)
1. 재무제표, 영업보고서의 승인
 2. 배당(주식, 현물, 중간 포함)
 3. 신주의 발행(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포함)
 4. 주식의 액면 분할 및 병합
 5. 사채의 발행
 6. 회사 주요자산(장부가액 기준 자기자본의 4% 이상 초과)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
 7. 자기자본의 4% 이상을 초과하는 국내외 차입계약 또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
 8. 내부회계관리규정, 이사회 운영규정 등 중요한 사규의 제정, 개정, 폐지
- ④ 조직관리 및 기타 주요 경영사항 (改定 2020.05.13)
1. 준법지원인의 임면,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
 2.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(보고)
 3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(보고)
 4.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 5.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승인
 6.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결의사항

제 5 장 위 임

제 12 조【 위임 】 (新設 2020.05.13.)

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3 조【 이사회 내 위원회 】 (新設 2020.05.13.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. 감사위원회
 2.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
 3. 내부거래 위원회
 4. 기타 각종 위원회 등 (新設 2021.05.11.)
- ② 위원회는 각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 6 장 기 타 사 항

제 14 조【 의사록 】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 (改定 2020.05.13)
- ②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서는 그 의사 경과 요령과 채택된 결과 및 반대하는 이사와

그 반대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를 주재한 의장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 및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. (改定 2020.05.13)

제 15 조【비등기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감독권】 (新設 2020.05.13.)

- ① 이사회는 각 비등기임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비등기임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수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6 조【사외이사 업무 수행 지원】 (新設 2021.05.11)

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